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5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평창군수

1.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자 율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지원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품목별연구모임 육성 기본방향, 계획수립, 평가(안 제4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19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08.05. ~2020.08.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9125, 2020.07.24.)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9125, 2020.07.24.)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복지과-40188, 2020.07.07.), 의견일 부수용(기술지원과-5669, 2020.07.31.)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된 평창 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 한 모임을 말한다.
-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①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평창군(또는 평창)"과 "품목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 1. 연구회는 하나의 품목당 하나의 연구회를 갖는다.
- 2. 연구회는 읍 면, 품종, 기술 등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3. 연구회는 농산물, 농산물 가공·유통 및 농업관련 산업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연합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목적, 사업, 회원(연구회)의 등록,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④ 연합회의는 각 연구회의 회장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연구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협의 한다.
-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 ① 연구회 회원의 신청 자격은 평창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 ② 연구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재배 농가가 적을 시 15인 이하 연구회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연구회는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군수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서류)**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회 등록 신청서 1부
 - 2. 회칙, 회원명단(성, 연령, 거주 지역 포함),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활동) ① 연구회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 ② 연구회는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 ③ 연구회는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 ④ 연구회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 ⑤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⑥ 연구회는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1. 연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 2.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을 회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3. 선진지 견학 및 관외 연수 등은 1년(12개월) 이상 활동한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다.
- 4.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 포함)에 대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 5.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군수는 매년 연구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연구회 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취소) 군수는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연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 회원 수가 15인 이하가 될 경우. 다만, 품목 재배 농가수가 적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 3. 연간 2회 이상 자체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4. 활동 실적 평가결과 연속 3년 이상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 5.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 6.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7.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이 되어있는 연구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붙임]

관련 법령 발췌

□ 농촌진흥법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농촌진홍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홍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홍청 및 지방농촌진홍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

- 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 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 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

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 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9조(운영지원)

- 회원 및 담당 공무원의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연례 반복 지원하였던 세부사업비 총액이 19,000천원(도비2,000천원, 군비17,000천원)으로 연평균 50,000천원 미만 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연락처	(033) 330 - 1304